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1. 甲
2. 乙
검 사 최윤희(기소), 김경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최린아(피고인 甲을 위하여)
변호사 이상욱(피고인 乙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4. 3. 25.

주 문

피고인 甲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乙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甲은 ****호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甲은 2013. 9. 14. 0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네거리 방향에서 **육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시속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지정속도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甲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90km로 과속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A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그에 미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하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3. 9. 14. 05:32경 대전 중구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복증,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 甲의 법정진술
-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1. 교통사고보고
-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도로를 무

단행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 참작)

무 죄 부분

1. 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4. 04:00경 대전 ****호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네거리 방면에서 **육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 상에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甲 운전의 화물차량에 충격되어 3차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A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 좌측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3. 9. 14. 05:32경 대전 중구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복증,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甲 운전의 화물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 乙 운전의 택시가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 甲 운전의 화물차량에 의한 1차사고는 물론 피고인 乙 운전의 택시에 의한 2차사고도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2차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甲이 과속상태에서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화물차량 진행방향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A를 위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 피해자는 위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머리 및 하체 부위

를 충격당하여 약 20여 미터를 튕겨나가 도로변에 쓰러졌고, 그 후 피고인 乙의 택시가 1차사고의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피해자의 시신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위 사고로 피해자는 우측 갈비뼈 2번 내지 8번, 좌측 갈비뼈 8, 9번이 각 골절되었고, 위 골절부위 주변의 광범위한 출혈, 피해자의 좌측 넓적다리뼈 골절 및 근육 주변의 출혈, 간 파열, 배 안 및 좌우 기관지 내강과 폐 실질에서의 다량의 출혈 등이 확인된 사실, 부검감정의는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해 부위 및 정도를 종합하여 피해자가 충격에 의한 흉복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사망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저혈량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혈복증이라고 기재된 사실, 피고인 乙의 택시에 의한 2차사고는 피고인 乙이 택시를 도로변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저속으로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차사고 당시 피고인 甲의 화물차량이 상당한 과속으로 진행하던 상태였던 점, 위 화물트럭의 피해자에 대한 충격의 정도가 다수의 갈비뼈 골절 및 내부 장기의 파열과 다량의 출혈을 야기할 정도로 컸던 점, 부검결과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흉복부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 甲의 화물트럭에 의한 1차사고로 흉, 복부에 치명상을 입어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반면 피고인 乙의 택시는 2차사고 당시 서행 중이었던 점, 위 택시가 피해자를 역과한 부위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은 흉복부 등 몸통 부위가 아니라 다리 부위였던 점, 1차사고의 충격의 정도를 감안하면 피해자의 좌측 넓적다리 부위 골절 역시 피고인 乙의 택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1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乙의 택시로 인하여 발생한 2차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철한 _____